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3
----------	------

제출일자 : 2018. 7.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다사 매곡 테니스장의 신축과 화원 테니스장의 개축에 따라 관내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사전에 조정하고,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중 유아와 초등을 구분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별표 1, 명칭 및 위치 변경

- 다사 테니스장 삭제, 다사 매곡 테니스장 추가

나. 안 별표 2, 테니스장 사용료를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여 상한액 설정

다. 안 별표 3,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중 유아초등(만 12세이하)을 초등과 유아로 구분하여 상한액 설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6. 5. ~ 6. 2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 민 체 육 센 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군 민 운 동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 민 체 육 관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논 공 축 구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화 원 테 니 스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 풍 테 니 스 장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화 원 게 이 트 볼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 사 체 육 공 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 창 체 육 공 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 곡 체 육 공 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 성 스포츠 파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강 변 체 육 시 설	낙 동 강	달 성 강 변 야 구 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 선수대기실
		하빈지구 체육시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 호 강	금호강변 체육시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 민 체 육 관	전 사 용	체 육 관	주 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 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 목 적 강 당	주 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 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체 강습	어린이	월 80,000 (주 2회)		-		
			일반	월 60,000 (주 3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회 원 권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		
가 체 육 공 원	창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사 체 육 공 원	창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하 딩 크 드림 필드 풋 살 장	주 간 (1시간)		30,000	40,000	90,000	120,000	
		야 간 (1시간)		40,000	60,000	120,000	180,000	
명 체 육 공 원	국	인 스 케 이 트 인 장	주·야간		-	-	-	-
		다 목 적 운 동 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 민 운 동 장			주·야간		-	-	-	-
논 축 구 장	공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장	풋 살 장	주 간 (1시간)		35,000	45,000	105,000	135,000
			야 간 (1시간)		45,000	55,000	135,000	165,000
강 변 야 구 장	마 사 토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인 조 잔 디			65,000	90,000	150,000	200,000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달성 스포츠파크	경기장	축구장	주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조 경기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목적 체육관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	
			야간 (1시간)	50,000		-	
		강습료	프로그램 (1회 1시간)	월 90,000 (주 3회)		-	
			지도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개인사용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하반기 체육시설	야구장		주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축구장		주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구장		주·야간	-	-	-	-
	족구장		주·야간	-	-	-	-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농공축구장 내)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체		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80,000			
		1회	20,000			
	실외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30,000			
		1회	15,000			
비 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 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세~12세)			유아 (만6세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월 50,000원														
	요 가 에어로빅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비 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축구장), 게이트볼장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논공축구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회원테니스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사테니스장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 테니스장	
현풍테니스장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회원게이트볼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사체육공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항체육공원	달성군 가항면 가항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곡체육공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12	- 인리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임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강변체육시설	달성강변마구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마구장, 선수대기실
	하빈지구 체육시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마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호강변 체육시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축구장), 게이트볼장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논공축구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회원테니스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풍테니스장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회원게이트볼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사체육공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항체육공원	달성군 가항면 가항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곡체육공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12	- 인리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임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강변체육시설	달성강변마구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마구장, 선수대기실
	하빈지구 체육시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마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호강변 체육시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현행						개정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생략)						(현행과같음)							
테니스장 1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	주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야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	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단체	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30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테니스장 2 (화원테니스장, 다사테니스장)	개	주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삭제>						
		야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단	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20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20,000		-	-							
실내 테니스장	개	주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야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	주간 (주1회, 1개월, 3시간)	면당 150,000		-	-		단체	주간 (주1회, 1개월, 3시간)	면당 15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3시간)	면당 18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3시간)	면당 180,000		-	-
(생략)						(현행과같음)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별첨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6,000	84,000	48,000	36,000	54,000	36,000	3,200	2,200	1,800
	헬스장 (㎡)	월 50,000원													
	요 가 에어로빅 (㎡)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비 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세~12세)			유아 (만6세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별첨국민체육센터	수영장 (㎡)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800			
	헬스장 (㎡)	월 50,000원																	
	요 가 에어로빅 (㎡)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비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